

의안번호	제 45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12 . 1 .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12.1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됨으로써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함.

2. 법적근거

- 「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」(법률 제5304호, '97.3.7)

3. 주요골자

-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중 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

4. 개정규칙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중 “사회단체육성, 출판, 향교, 사찰관리”를 “출판, 향교, 사찰관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문화공보담당관실)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호내지 2호 (생략) 3. <u>사회단체 육성, 출판, 향교, 사찰 관리</u> 4호내지 17호 (생략)	제5조(문화공보담당관실) 1호 내지 2호 (현행과 같음) 3. <u>출판, 향교, 사찰관리</u> 4호 내지 17호 (현행과 같음)